



국가표준화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공인기관인정제도운영요령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화학분야 KOLAS공인시험기관에 적용하기 위한 세부지침을 규정하는 「화학적 시험방법의 유효성 확인을 위한 KOLAS 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2년 2월 17일

기술표준원장

화학적 시험방법의 유효성 확인을 위한 지침 개정

구분	규격번호	규격명	규격내용
개정	KOLAS-G-015	화학적 시험방법의 유효성 확인을 위한 지침	별첨

[별첨] : 1. 개정전문(KOLAS-G-015)
2. 신규대조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고시) 이 기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측정결과불확도추정및표현을위한지침(기술표준원 고시 제2008-242호 : 2008. 05. 26)은 폐지하며, 종전의 지침에 따른 기타 행위는 이 기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